

5.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內務部公告 第1995-81號 1995. 10. 5

1. 제안이유

신경제 5개년계획의 과표현실화계획에 따라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소득할)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시설 및 유통단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며, 기타 세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로 되어 있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로 연장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분으로 하되, 상속인 상호간에

연대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나. 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에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시행 초기인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함.

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신고금액의 최저한을 종전의 시가표준액에서 토지분은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의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라. 대도시 교통난 해소와 국가지원절약을 위하여 경차동차에 대한 등록세 세율을 현재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함.

마.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에 대한 주민세와 면허세의 세율을 종전의 군지역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광역시로 편입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함.

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현재 농지세액·법인세액·소득세액의 7.5퍼센트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사. 배기량이 큰 승용차에 증가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인하 조정함(2,500cc~3,000cc : cc당 410 → 310원, 3,000cc초과 : cc당 630원 → 730원).

아. 담배소비세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국산담배와 외국산담배를 구분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자.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토지분)의 과표기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차.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

카. 어촌계가 어민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고, 어민후계자 및 수산계열 학교 졸업자가 취득하는 어업권과 어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타. 천재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 자동차를 추가함.

파. 물류비용절감과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연안화물운송용선박에 대해서도 외항선박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공업단지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

하.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및 공장입지 확보 애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업단지안에서 중소기업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내무부장관(참조: 세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잘 지은 건물하나 평생동안 나의 명함